

제2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111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4. 29.(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익봉의원외6인】
2.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3.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6.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의원외6인】
7.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의의원외6인】
8.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9.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1.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성 주 군 수】
12.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13.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4.
발의자 : 장익봉,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로 함.

2.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참 고**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안건 심의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위원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위원 또는 가족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으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주군 건축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산물
2. 「성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제2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 이어야 한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p> <p><u>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u> <p>⑤ ~ ⑦ (생략)</p> <p><u><신설></u></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u>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u> <u>2. 위원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u> <u>3. 위원 또는 가족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u> <u>4. 위원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u>

1. ~ 2. (생략)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성주군 건축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②영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 있다.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

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별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 토지의 취득·처분

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 처분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
수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
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
된 결산서 등을 「지방재정법」 제6
0조에 따라 공개하며,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
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
제8호·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
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
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을 말한다.

1.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
례」 제2조에 따른 농산물
2. 「성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산제품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

략)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비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 제

3. ~ 7. (생략)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 4. (생략)

5. 삭 제

<신설>

<신설>

행과 같음)

④-----

-----.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 7. (현행과 같음)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2. ~ 4.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으로 점유·

<신 설>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 설>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참고사항**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018. 1. 9.>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그 대상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 중 주식회사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삭제 <2023. 12. 12.>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삭제 <2023. 12. 12.>
- 나. 삭제 <2023. 12. 12.>
- 다. 삭제 <2023. 12. 12.>
- 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마. 삭제 <2023. 12. 12.>
- 바. 삭제 <2023. 12. 12.>
- 사. 삭제 <2023. 12. 12.>
-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 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4.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7.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라목에 따른 매수 예약 신청일 및 매수 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일 것
-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 2) 10년 이상의 기간
 -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라. 다목의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목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제정이유

농업 생산 활동과 야간 농기계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성주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농업인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성주군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성주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성주군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인식제고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
3.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 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관련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② 삭제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김경호,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추가(안 제7조제6호)

-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성주군”을 “성주군의회”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p> <p>②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u>성주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p> <p>③ (생 략)</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생 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성주군의회</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김경호,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조례에 인용된 법률 현행화 및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 재직휴가 부여 기준과 포상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10일”을 “10일(최대2회 분할 사용)”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5일”을 “20일(최대4회 분할 사용)”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2일의 특별휴가”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최대4회 분할 사용)

제13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⑩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 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 정은 별표4와 같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 ----- -- 5년 ----- ----- -----.
제1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u>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 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 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 가는 무급으로 한다.(2006.1.11.개 정)</u>	제1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u>5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 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u> 1. <u>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 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 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u> 2. <u>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 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u>	<u><삭 제></u>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
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
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사
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
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
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
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
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
한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
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
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
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④-----
-----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삭 제>

⑥ ----- 5년 -----

----- . <후단 삭제>

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총 사용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 설>

- ⑦ (생 략)
- ⑧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2. -----
- 10일(최대2회 분할 사용)
- 3. -----
- 20일(최대4회 분할 사용)

<삭 제>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최대 4회 분할 사용)

- ⑦ (현행과 같음)

- ⑧ -----
-----2일의 특별휴가-----.

- ⑨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⑩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⑪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출 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입 양	본인	2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현행	개정안
<p>【별지 제4호서식】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p> <p>【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p>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p>【별지 제4호서식】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p> <p>【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p>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참고사항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김종식,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민간위탁 용어 등 정의 항목을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사. 위탁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소속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명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 한 실무경력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 출장 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⑦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서와 제13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6. 계약위반 시의 책임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운영지원 등)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 및 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군수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사무처리지침이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편람은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수탁기관 감사) ① 군수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된 예산, 시설, 물품 및 서류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에 한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50조 중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성주군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김종식,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여부, 범위, 처리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의 적용범위 및 대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나.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위탁·대행의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 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 위탁·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아. 수행·수탁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대행)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위탁(대행)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군수는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최초 위탁·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9. 그 밖에 위탁·대행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대행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준용한다.

제7조(수탁·대행기관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②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할 경우, 그 결과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대행의 목적

2.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위탁·대행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위반 시의 책임사항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대행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9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를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에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자금집행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정산 등)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사무처리지침이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편람은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실적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대행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수탁·대행기관 감사) ① 군수는 해당 위탁·대행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탁·대행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 수탁·대행기관의 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대행기관의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교육 등) 군수는 위탁·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의 처리를 위해 교육 또는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도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장익봉,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1. 개정이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의 결여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 대상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처장의</u></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국가보훈부장관</u>----- -----</p>
<p>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u>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u>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u></p> <p>1. <u>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u></p> <p>2.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의 적용 대상자</p> <p>3.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의 적용 대상자</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제8조 관련)</p> <p>■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22>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p> <p>※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접수번호</td> <td style="width: 50%;">접수일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대상구분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전문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기타</td> </tr> <tr> <td>신청인</td> <td>성명</td> </tr> <tr> <td></td> <td>생년월일</td> </tr> <tr> <td></td> <td>주소</td> </tr> <tr> <td></td> <td>전화번호</td> </tr> <tr> <td>예금계좌</td> <td>금융기관명</td> </tr> <tr> <td></td> <td>예금주성명</td> </tr> <tr> <td></td> <td>계좌번호</td> </tr> </table> <p>「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성주군수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신청인 제출서류</td> <td>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td> <td>수수료</td> <td></td> </tr> <tr> <td>담당자 확인서류</td> <td>①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td> <td>없음</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p>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p>☐ 이 이용기관은 본인이 분리한 위 금융이용 합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합장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p> <p>☐ 주민등록번호 :</p> <p>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p>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구분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전문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	수수료		담당자 확인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없음		<p>【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제8조 관련)</p> <p>■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접수번호</td> <td style="width: 33%;">지급대상유형</td> <td style="width: 33%;">접수일자</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대상유형</td> </tr> <tr> <td>신청인</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r> <tr> <td></td> <td>주소</td> <td></td> </tr> <tr> <td></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예금계좌</td> <td>금융기관명</td> <td>예금주성명</td> </tr> <tr> <td></td> <td>계좌번호</td> <td></td> </tr> </table> <p>「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성주군수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신청인 제출서류</td> <td>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td> <td>수수료</td> <td></td> </tr> <tr> <td>담당자 확인서류</td> <td>①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td> <td>없음</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p>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p>☐ 이 이용기관은 본인이 분리한 위 금융이용 합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합장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p> <p>☐ 주민등록번호 :</p> <p>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p>	접수번호	지급대상유형	접수일자	대상유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	수수료		담당자 확인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없음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구분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전문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	수수료																																																						
담당자 확인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없음																																																						
접수번호	지급대상유형	접수일자																																																						
대상유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	수수료																																																						
담당자 확인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없음																																																						

참고사항

관련근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과건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4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성주군 거주 외국인의 지역 생활 적응을 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참그린사회통합프로그램)
- 2)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3) 사업비 : 100,000천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0)
- 4) 위탁사무
 -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외국인 정착지원(체류, 복지, 법률) 교육

나. 수탁자 선정

-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 2) 신청자격 : 비영리단체 및 법인
- 3)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4)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도 등 심사표에 의거 배점으로 평가
- 5) 선정결과 : 경북과학대학교

3. 향후계획

- | | |
|--------------|----------|
| 가. 위·수탁 협약체결 | 2025. 4. |
| 나. 위탁관리 운영 | 2025. 5. |

4. 참고자료

- 가. 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 나.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관 련 법 령】

▣ 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합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미래전략실 청년외국인팀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100,000		
인건비	인건비	30,000	·업무총괄책임자 150,000원*1명*12개월=1,800,000원 ·관리직원 300,000원*2명*12개월=7,200,000원 ·코디네이터 1,500,000원*1명*12개월=18,000,000원 ·보조코디네이터 500,000원*1명*6개월=3,000,000원	
	소계	30,000		
운영비	강사수당	17,000	·한국어수업 50,000원*80시간*2개과정=8,000,000원 ·개별프로그램 800,000원*10개특강=8,000,000원 ·역량강화 1,000,000원*1식=1,000,000원	
	사무관리비 및 기타운영비	20,000	·사무관리비 1,000,000원*12개월=12,000,000원 ·기타운영비 8,000,000원*1식=8,000,000원	
	프로그램 운영	33,000 원	·사업비(프로그램운영) 2,000,000원*12개월=24,000,000 ·행사(개강,수료,축제) 11,000,000원*1식=11,000,000원	
	소계	70,000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서(안)

성주군(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경북과학대학교(이하 “수탁자” 이라 한다)는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내용 :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기간 : 2025. 5. 1. ~ 2026. 4. 30. (1년)
3. 위탁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위탁자” 가 “수탁자” 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같다.

1. 사업(업무)의 종류
 - 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
 - 나. 「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2.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비품, 장비 등 일체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 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2025. 5. 1. ~ 2026. 4. 30.)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 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 라 한다)을 “수탁자” 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가 심사·결정한 후 지급하되, “수탁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프로그램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민·형사상 책임) ①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즉각 보고해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 가 “위탁자” 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사업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위탁자” 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자” 와 “수탁자” 는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는 제1항 제1호, 2호, 3호,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업비의 반환) ① “수탁자” 는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비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는 사업 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 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그 밖의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1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지침, 성주군의 조례 등을 따른다.

② 이 협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와

“수탁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 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협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2025년 4월 30일

“위탁자” 성주군(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수 이 병 환 (인)

“수탁자” 경북과학대학교(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634)
대표자 정 은 재 (인)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2024년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 이 양립하는 조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휴가 확대 시행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10일(최대 2회 분할사용)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20일(변경, 최대 4회 분할사용)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 20일(최대 4회 분할사용)

나. 자녀 군입영 휴가 확대시행(1일 ⇒ 2일)

다. 모성 및 양육가정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 임신 16주 이내 여성공무원 특별휴가(5일)
-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보육휴가(5일)

라. 저년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3일)

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조항 삭제

- 제23조 제3항(여성보건휴가)
- 제23조 제4항(육아시간)
- 제23조 제10항(재해구호휴가)
- 별표3(경조사별휴가일수표) : 결혼(본인·자녀), 출산(배우자), 입양(본인), 사망(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바. 상위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

-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2년 ⇒ 5년
- 제23조(특별휴가) 제5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별표3(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방법)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2일가산 ⇒ 3일가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2578(2025.02.25.)
- 라. 성별영향평가 : 가족지원과-10478(2025.02.25.)
- 마. 입법예고 : 2025. 3. 13. ~ 2025. 3. 21.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최대2회 분할사용)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최대4회 분할사용)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최대4회 분할사용)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p>	<p>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p>
<p>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삭제</p> <p>③ <u>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u></p> <p>④ <u>5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u></p> <p>1. <u>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u></p> <p>2. <u>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u></p> <p>3. <u>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u></p>	<p>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 ⑨ 삭 제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총 사용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 설>

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삭 제>

⑪ ---- 5년 -----

-----.<후단 삭 제>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 2회 분할사용)
-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최대 4회 분할사용)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최대 4

⑫ (생 략)

⑬ 직원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회 분할사용)

⑫ (현행과 같음)

⑬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관련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해당 조례 일부개정 시 비용추계 사유가 없음에 따라,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라.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총무팀장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4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추진방법 : 사용·수익허가 (제한경쟁) 입찰
- 나.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다. 사 용 료 : 29,650,070원 (연간사용료) * 부가세 미포함
- 라. 산정방법 : 재산가액 x 사용요율 + 부가세(본세의 0.1%)
(523,635,560원 + 69,366,010원) × 요율(50/1000) + 2,965,000원
- 마. 수익허가 조건
 - 사용료 1년 단위 선납
 -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
 - 사용허가 재산 제3자 전대 불가 및 연고권 배제
 -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손해보험료, 공과금 등 부과금은 사용자 일체 부담.

3. 시설현황

- 가. 위 치: 금수강산면 광산리 125(성주로 1903)
- 나. 규 모: 2동(연면적 848.68m²)
 - 권역활성화센터 : 지상 2층 704.24m²
 - 식 당 : 지상 1층 144.44m²

다. 시설내용 : 다목적실, 체험관, 회의실, 숙박시설 등

구 분	다목적실	사무실	휴게실	숙박시설	식당(체험관)
면적(m ²)	89.2	15.5	26.5	120.4	100.8

※ 숙박시설 : 총 4실(8평 2, 13평 1, 15평 1)

라. 준 공 일 : 2016. 12. 19.



권역 활성화 센터



식 당

4. 근거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 나.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 다.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라. 「성주군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마. 「성주군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조례」
- 바. 「성주군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료)
- 사.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0., 2015.11.12>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0., 2015.11.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 1. 10.>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1.1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한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2015.11.12, 2016.11.10>

⑥ 제1항 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성주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1.12.>

「성주군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개정 2021. 6. 1.>

- 제11조(위탁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을 한 경우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 라 한다)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② 시설물의 관리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의 일부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반드시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가 시설물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 ③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결을 받을 수 있다.

【붙임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 대상 건물 개요 ※ 일반건축물대장 기준

(단위 : m²)

소재지	구조	층별	용도	면적	사용승인일	임대면적
금수강산면 광산리 125외 3필지	철근콘크리트 구조	I동 1층	문화및집회시설 (체험관)	439.65	2017.05.17	439.65
		I동 2층	문화및집회시설 (체험관)	264.59		264.59
		J동 1층	문화및집회시설 (식당)	144.44		144.44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부가세 별도)

소재지	용도	사용면적	공시지가 및 건물평가액 (m ²)당	사용 요율	산출근거	사용료 (원단위절사)
금수강산면 성주로 1903	건물 (체험관, 식당)	848.68m ²	617,000원	5%	848.68m ² * 617,000원 * 0.05 = 26,181,778원	26,181,770원
금수강산면 성주로 1903	토지	848.68m ²	81,734원	5%	848.68m ² * 81,734원 * 0.05 = 3,468,300원	3,468,300원
계						=29,650,070원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 이용 시 대여행위 등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중단 등 제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무료이용 대상자 70세 이상의 성주군 주민으로 특정(안 제5조)
- 나. 무료이용 지원 체계 구축 및 카드 발급 의무화(안 제4조, 제6조)
- 다. 교통카드 대여금지 및 부정사용 시 지원중단 명시(안 제7조, 제9조)
 - 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나)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 다)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라)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마)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운송사업자 손실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안 제8조, 제10조)
- 마. 타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 체결(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2582(2025.2.25.)]
-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10465(2025.2.25.)]
- 라. 입법예고 : 2025. 3. 13. ~ 4. 2.(20일간)
-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3. “무임교통 지원”이란 대상자가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군과 환승·연계되어 있는 군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로 무료 이용하고,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한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및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
3. 그 밖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대상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교통카드 발급) ①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 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군수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이용요금 할인을 등) ① 노인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을 위해 노인등에게 발급되는 교통카드 등이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보전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가. 재정수반요인

- 노인무료 승차에 따라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나.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무료 승차 : 2025. 7. 1.부터 실시
 - 1)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전액 무료 ※ 대상인구 10,971명(26.6%)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6차년도 (2030년)	합계
세입	소계(a)	240	300	300	300	300	300	1,740
세출	소계(b)	441	1,000	1,000	1,000	1,000	1,000	5,441
□ 총 비용(a-b)		-201	-700	-700	-700	-700	-700	-3,701

라.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
도비	일반회계	240	300	300	300	300	300	1,740
	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군비		201	700	700	700	700	700	3,701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441	1,000	1,000	1,000	1,000	1,000	5,441

마. 부대의견

-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로 교통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바. 작성자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4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제안이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식음시설(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 치 :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
- 나. 시설규모 : 건물연면적 3,836.68㎡ 중 지상3층 북카페 121.16㎡
- 다. 계약방법 : 공개경쟁(지역제한)모집
- 라.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 마. 사용료 산정기준 :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0.05(요율)
- 바. 수익허가 조건
 - 사용료 1년 단위 선납
 -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
 - 사용허가 재산 제3자 전대 불가 및 연고권 배제
 -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손해보험료, 공과금 등 부과금은 사용자 일체 부담.

3. 관련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사용허가, 기간)
- 나.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 다.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의결사항)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사용허가, 기간)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4 29(화) 10:30
성주군의의회 본회의장

제289회 성주군의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 성주군의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 성주군의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안건 심의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나.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명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농업 생산 활동과 야간 농기계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성주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있어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추가(안 제7조제6호)

-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3. 검토의견

-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조례에 인용된 법률 현행화 및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 재직휴가 부여 기준과 포상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률 현행화 및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기준과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민간위탁 용어 및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사. 위탁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로 민간위탁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을 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책임 기능을 강화한 계약체결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민간위탁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여부, 범위, 처리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의 적용범위 및 대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나.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위탁대행의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 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 위탁·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아. 수행·수탁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민간위탁과 구분하여 공공위탁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공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책임의 소재, 의회 동의, 지도감독, 감사 및 성과평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위탁의 절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대행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의 결여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성주군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성주군 거주 외국인의 지역 생활 적응을 도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참그린사회통합프로그램)
- 2)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3) 사업비 : 100,000천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0)
- 4) 위탁사무
 -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외국인 정착지원(체류, 복지, 법률) 교육

나. 수탁자 선정

-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 2) 신청자격 : 비영리단체 및 법인
- 3)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4)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도 등 심사표에 의거 배점으로 평가
- 5) 선정결과 : 경북과학대학교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성주군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외국인 주민의 구성 다양화와 생활 영역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사업은 외국인 주민이 자립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24년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휴가 확대 시행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10일(최대 2회 분할사용)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20일(변경, 최대 4회 분할사용)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 20일(최대 4회 분할사용)

나. 자녀 군입영 휴가 확대시행(1일 ⇒ 2일)

다. 모성 및 양육가정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 임신 16주 이내 여성공무원 특별휴가(5일)
-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보육휴가(5일)

라. 저년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3일)

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조항 삭제

- 제23조 제3항(여성보건휴가)
- 제23조 제4항(육아시간)
- 제23조 제10항(재해구호휴가)
- 별표3(경조사별휴가일수표) : 결혼(본인·자녀), 출산(배우자), 입양(본인), 사망(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바. 상위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

-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2년 ⇒ 5년
- 제23조(특별휴가) 제5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별표3(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방법)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2일가산 ⇒ 3일가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공무원의 근무 의욕 고취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기재직자 및 저년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 제안이유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방법 : 사용·수익허가(제한경쟁) 입찰

나. 사 용 료 : 29,650,070원(연간사용료) *부가세 미포함

다. 산정방법 : 재산가액 x 사용요율 + 부가세(본세의 0.1%)

라. 수익허가 조건

- 사용료 1년 단위 선납
-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
- 사용허가 재산 제3자 전대 불가 및 연고권 배제
-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손해보험료, 공과금 등 부과금은 사용자 일체 부담.

3. 시설현황

가. 위 치: 금수강산면 광산리 125(성주로 1903)

나. 규 모: 2동(연면적 848.68㎡)

- 권역활성화센터 : 지상 2층 704.24㎡

- 식 당 : 지상 1층 144.44㎡

다. 시설내용 : 다목적실, 체험관, 회의실, 숙박시설 등

구 분	다목적실	사무실	휴게실	숙박시설	식당(체험관)
면적(m ²)	89.2	15.5	26.5	120.4	100.8

※ 숙박시설 : 총 4실(8평 2, 13평 1, 15평 1)

라. 준 공 일 : 2016. 12. 19.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사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농어촌 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 이용 시 대여행위 등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중단 등 제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무료이용 대상자 70세 이상의 성주군 주민으로 특정(안 제5조)
- 나. 무료이용 지원 체계 구축 및 카드 발급 의무화(안 제4조, 제6조)
- 다. 교통카드 대여금지 및 부정사용 시 지원중단 명시(안 제7조, 제9조)
 - 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나)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 다)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라)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마)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운송사업자 손실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안 제8조, 제10조)
- 마. 타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 체결(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되는 통합무임교통카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이용 대상, 부정사용 방지, 제재 사유 및 관리체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중단 등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 제안이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식음시설(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

나. 시설규모 : 건물연면적 3,836.68㎡ 중 지상3층 북카페 121.16㎡

다. 계약방법 : 공개경쟁(지역제한)모집

라.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마. 사용료 산정기준 :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0.05(요일)

바. 수익허가 조건

- 사용료 1년 단위 선납
-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
- 사용허가 재산 제3자 전대 불가 및 연고권 배제
-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손해보험료, 공과금 등 부과금은 사용자 일체 부담.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반다비체육센터 내 유휴공간인 북카페에 대해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제시된 허가조건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